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79 제안연월일 : 2025. 3.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2202789)	2024.8.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제41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4.11.27.) 상정/축조심사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5.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문금주의원 (2203170)	2024.8.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5.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이상식의원 (2204635)	2024.10.10.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2.19.) 상정/축조심사/의결 (대안반영폐기)
정 부 (2205031)	2024.10.30.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2.19.) 상정/축조심사/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2.19.)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2.25.)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 발 및 발전·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
-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제29조 중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를"을 "세출예산에 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

시 경인 즉 경역자급 대의 에진흑 합위에서 즉 인기자급 또는 즉의 급표

을"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인회계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 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 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제40조제2항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설립)"을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 성조사
- 2.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 ⑤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회계감사보고서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를 각각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하고, 제6장에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1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제1항·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

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인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하는 경우
 - 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 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 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회계감사인에게 제66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
- 제82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제7 8조의4에 따른 평가원의 감사는 제외한다)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 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83조(종전의 제81조) 중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65조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1호·제12호,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제2조(적용 범위)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	
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	
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	
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	
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	
용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u>개발·이용·보급 촉진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
	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
	이용 • 보급에 필요한 사업
<u> <신 설></u>	<u>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u>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	제29조(예산의 전용)

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 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 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 項) 및 목(目) 경비를 전용(轉 用)할 수 있다.

제35조(결산)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기	성 책
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제35조(결산) ①・② (현행과	같
<u></u> 이	
③	

----- 「주식회사 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 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 계감사인"이라 한다)-----

>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 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 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 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 로 정한다.
-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 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9조(설립) ① ~ ④ (생 략)

<신 설>

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 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 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 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 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① (현행과 같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의2제1항 -

제49조(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 른 지방자치단체(시 · 도와 시 · 군 · 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② (생 략)
<<u><신 설></u>

지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사·심사를 거쳤거 나 제외된 사업
 - <u>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u> <u>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u> 사
 -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 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③ (생 략) <신 설>

제66조(결산) ① (생 략)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 2.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쳤 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 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⑤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 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회계감사보고서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

<신 설>

항"으로 본다.

제81조(벌칙) ① 「상법」 제635 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 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 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 제1항・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 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절금에 처한다.

③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 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 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법금에 처한다.
-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 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회계감사인의 요구 또 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하 는 경우
 - 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 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 3. 회계감사인에게 제66조제2항 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

<신 설>

니한 경우

제82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제78조의4에 따른 평가원 의 감사는 제외한다) 또는 회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 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 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 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 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 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 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제공 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 제83조(벌칙)

원(감사는 제외한다)이 <u>제65조</u>	<u>제65</u>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	조를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u>다)을</u>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82조</u> · <u>제83조</u> (생 략)	<u>제84조·제85조</u> (현행 제82조 및 제83조와 같음)